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창 업 경 제 과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소진혁 의원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 .

발 의 자 : 소진혁 의원(1인)

찬 성 자 : 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
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
김현경·김효석·박윤경·양진오
이상호·이정호·임명섭·장미경
전희정 의원(17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나. 조합 활성화 촉진, 조합 경영 등 지원(안 제5조～제6조)

다.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안 제7조～제8조)

라. 경비 보조, 홍보, 위탁, 포상(안 제9조～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9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4)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부서검토: 창업경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구미시 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 확산 및 협동조합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경영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3.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시 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유통구조 협동화·효율화 등 판로촉진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 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및 시장개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시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

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구미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창업경제과

조 례 명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5조(적용대상 기관)

□ 주요 사항

○ 목적, 정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조합 활성화 촉진, 조합 경영 등 지원(안 제5조~제6조)

○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안 제7조~제8조)

○ 경비 보조, 홍보, 위탁, 포상(안 제9조~제12조)

□ 검토 결과

○ 중소기업 협업 기반을 통한 공동사업 및 판로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생협력 강화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제7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문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문구를 삭제하고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공동사업,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협업 기반 조성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안 제7조)

○ 경비의 보조(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창업경제과 창업경제팀 이지연(☎480-6105)